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정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8일

발 의 자 : 송정빈, 이상훈 의원 (2명)

찬 성 자 : 송아량, 이정인, 이동현, 최기찬
문장길, 김정환, 정진술, 한기영
오현정, 권순선, 오중석 의원
(11명)

1. 제안이유

「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30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, 이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률을 적용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시장·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, 대부료의 감면률을 80퍼센트로 적용함(안 제16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, 같은 법 시행령」 ,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제2호 중 “제3호에서”를 “제3호와 같은 조 제3항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대부료의 부과·징수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대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일부 감면 :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<u>제3호에</u> <u>서</u> 정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로서 감면비율은 해당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름</p>	<p>제16조(대부료의 부과·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제3호와</u> <u>같은 조 제3항에서</u> ----- ----- -----</p>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(대부료의 부과·징수)에서 일부 감면 대상에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제30조제3항을 추가함에 따라 세입 감소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5년간 1억 9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, 연평균 39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20)	(2021)	(2022)	(2023)	(2024)	
세입	대부료 감소	△35,411	△37,182	△39,041	△40,993	△43,043	△195,670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b-a)		35,411	37,182	39,041	40,993	43,043	195,670

다. 전제

- 개정 시점에서 「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시장·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인 경동시장(동대문구 제기동 1040)의 경우만을 상정함
 - 경동시장의 ‘동대문구 제기동 1040(대지면적 103.5㎡)’ 공유지상에 4층 건물이 점유된 상태임(1층은 통행로, 2~4층은 건물점유)
 - 점용면적은 88㎡임

- 이번 개정안의 의결 이후 발생하는 감면은 예측하기 어려움에 따라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
- 이정 개정안에 따라 경동시장의 대부 필지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, 감면되는 것으로 가정함
- 공시지가는 매년 5%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함
- 감면 금액 중 국비인 부가가치세(10%)는 제외하고 추계함
- 물가인상, 인건비 상승, 대부료율 상승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
-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추계함

라. 부과 및 감면 예상 금액

○ **부과 금액** : $\sum_{i=2020}^5 (\text{과세면적} \times \text{공시지가} \times \text{대부료율} \times \text{상승률}) = 244,587,221\text{원}$

○ **감면 금액** : $\sum_{i=2020}^5 (\text{과세면적} \times \text{공시지가} \times \text{대부료율} \times \text{감면율} \times \text{상승률})$

= 195,669,752원

구분	세목명	과세면적(㎡)	대부료율	공시지가	대부료(원), 공시지가 예상상승율(5%)				
					2020	2021	2022	2023	2024
부과 (100%)	제기동 1040	88	50/1000	9,581,000	44,264,220	46,477,310	48,801,170	51,241,230	53,803,291
감면 (80%)	제기동 1040	88	50/1000	9,581,000	35,411,370	37,181,840	39,040,930	40,992,980	43,042,632

※ 국비인 부가가치세(10%) 제외금액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여차민

예산분석관 한기백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phan@seoul.go.kr